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1 선고 2019가단5227353 판결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534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1 선고 2019가단5227353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종호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제

변론 종결2023. 7. 17.

판결 선고2023.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6,3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26,006,3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9.부터 각 2023.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919,000원 및 그 중 47,139,960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2,450,040원에 대하여는 2021.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50,329,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내 필라테스샵(이하 '이 사건 필라테스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센터 내 필라테스샵의 경영을 본 계약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계약이행 보증금 및 월세)

수익의 분배는 현금으로 하되, 당월에 종료된 수업에 해당하는 수익금이 익월에 지급되며, 수익의 분배는 매월 15일에 한다. 총 매출 중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카드매출 15%, 현금매출 10%)를

제외한 후 금액을 실 매출로 하며, 모든 정산은 실 매출에서 하기로 한다. 사업소득세 3.3% 제외 후 지급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계약일에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에서 70%를 지급한다.

제3조(시설물의 제공과 구입)

① 피고는 원고에게 필라테스샵 운영에 필요한 VIP룸1) 을 제공한다.

②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필라테스샵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입하는 비품(소모성물품)은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원고가 설치하거나 구입한 비품 및 인테리어(sign 물)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필요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업무범위)

① 원고의 업무범위는 제3조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필라테스 이용자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며, 수업운영 및 그에 따른 매출관리와 필라테스샵 운영 관리 등의 업무는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원고 직원의 복무관리, 회원들의 등록여부 및 출결사항, VIP존 시설물의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보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필라테스레슨 이용료 매출에 관련한 수납 등의 업무는 피고에게만 있으며, 필라테스샵 이용료 및 개인레슨에 관하여 원고의 수납 및 금전적 계약은 절대 불가하다. 원고를 통한 별도의 수납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즉시 자동해지되며, 보증금 전액과 시설물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정산지급이 되어야 할 수업료 또한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제6조(계약기간&보증금)

① 이 계약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피고가 서면으로 업체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③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계약 해지시에는 보증금 전액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정산지급 되어야 할 수업료 또한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④ 정상적인 계약해지 후 보증금은 필라테스레슨과 관련된 환불이 마무리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1조(운영권의 규정)

①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필라테스샵 운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VIP룸의 시설물과 비품을 임대하지 못한다.

제12조(계약해지)

① 피고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시에는 계약 당시 납입된 보증금과 미정산된 레슨비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갈음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3.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라테스샵 운영을 1일 이상 중단하거나 관리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③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이 사건 센터의 모든 자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며, 필라테스샵 관련된 환불 및 기타 문제에 관련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원고에게만 있으며,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4. 25. 피고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필라테스샵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에게 '2017. 5. 31.까지 인수인계 마무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7.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와 원고가 각 서명하였다.

1. 2017년 5월 31.일까지 기존의 계약을 종료의 관한 기존 계약의 연장건으로 1개월의 기한 연장을 허가합니다.

양수자에게 인수인계 마무리하시고, 6월 30일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수수료 비율을 70%에서 10% 차감된 60%로 지급합니다.

라. 피고는 2017.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인계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와 원고가 각 서명하였다.

1. 2017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계약을 종료의 관한 기존 계약의 연장건으로 1개월의 기한 연장을 허가합니다.

양수자에게 인수인계 마무리하시고, 7월 31일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수수료 비율을 70%에서 10% 차감된 60%로 지급합니다.

3. 206필라테스 매매 진행과 관련하여 시설 및 권리금과 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에게만 있습니다.

마. 원고는 2017. 7. 15. 피고로부터 2017. 6.까지 종료된 수업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2017. 7. 21.부터는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도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 15, 16, 1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19,919,000원(=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 54,680,000원 + 기구 사용료 23,329,000원 + 감가손해 27,000,000원 + 보증금 10,000,000원 + 미지급 수업료 4,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7. 7. 20.경 '무권리', '권리시설금 없음'이라고 기재된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권리금 감정평가액인 54,68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2017. 7. 21.부터 2022. 12. 22.까지의 사용료

피고는 원고 소유의 필라테스 기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사용료 상당액 23,329,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필라테스 기구 감가손해의 배상

피고는 원고 소유의 필라테스 기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필라테스 기구의 교환가치 감소라는 손해를 입혔는바, 2017. 7. 21. 기준 가액 27,510,000원에서 2022. 12.

22. 기준 가액 510,000원을 공제한 27,000,000원 상당의 감가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 보증금 및 미지급 수업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2017. 7. 21.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고, 미지급 수업료 4,9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25. 피고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필라테스샵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수인계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파기를 통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17. 7. 21.자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을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게 되어 사실상 위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필라테스샵 인수인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에 '이 사건 필라테스샵 매매 진행과 관련하여 시설 및 권리금과 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 및 갑 제4, 12 내지 14, 23, 24,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거나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필라테스 기구에 대한 사용료 및 감가손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따라 필라테스샵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입하는 비품(소모성물품)은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원고가 설치하거나 구입한 비품 및 인테리어(sign 물)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F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매한 아래 표 기재 필라테스 기구 등이 이

사건 필라테스샵에 설치되어 있고, 2017. 7. 21. 기준 가액은 합계 27,510,000원, 2022. 12. 22. 기준 가액은 합계 5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odern Reformer	2390mmx680mmx420mm	8대
2	Combi Reformer	-	1대
3	Cadillac	2170mmx760mmx580mm /1940mm	1대
4	Ladder Barrel	1060mmx500mmx900mm /1050mm	1대
5	Combi Chair	-	1대
6	Short Box	-	2대
7	Standing Plate	-	1개
8	Wood Stick	-	9개
9	Mat	1800mmx600mmx10mm /10mm	9개
10	Form Roller	-	9개
11	고정의자	-	2개
12	회전의자	black/white	1개
13	책장	800mmx280mmx1060mm	1개
14	Table	1500mmx750mm	1개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 표에 기재된 품목들 중 순번 9 내지 14 부분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비품(소모성물품)으로서 위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순번 9 내지 14 부분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합계 993,700원(= 매트 및 폼롤러 구입비 584,100원 + 고정의자 등 가구 구입비 409,60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위 표에 기재된 품목들 중 순번 1 내지 8 부분은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필라테스 기구로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비품(소모성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여전히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7. 12. 21. 이 사건 필라테스샵 위탁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위 필라테스 기구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017. 12. 21. 기준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6,516,300원(= 27,510,000원 - 993,700원)에서 2022. 12. 22. 기준 가액 510,000원만큼 감소된 교환가치 상당액인 26,006,300원(= 26,516,300원 - 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감가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 외에 피고에게 필라테스 기구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7. 7. 21.부터 위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또는 위탁운영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2017. 7. 21.부터 2022. 12. 22.까지 필라테스 기구의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보증금 및 미지급 수업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라테스샵 운영을 1일 이상 중단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 시에는 계약 당시 납입된 보증금과 미정산된 레슨비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갈음하여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위 위탁운영계약 제12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고, 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보증금의 액수, 수익의 분배비율, 위 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될 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물취대상인 보증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정액 1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5,000,000원으로 감액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등 합계 31,006,300원(= 손해배상액 26,006,300원 + 보증금 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부터, 나머지 26,006,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주현

1) 2017. 2. 17. 위 'VIP룸' 부분이 '요가룸'으로만 변경된 위탁운영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